

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고,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전주지방검찰청
정읍지청
공보담당관 지정장 조주연
전화 063-570-4301

보도자료
2021. 2. 21.(일)

자료문의 : 지청장실
전화번호 : 063-570-4301
주책임자 : 지청장 조주연

제 목 **영세 어민들 대상 활어 유통 사기 사건 수사결과**

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

피고인, 죄명, 공소사실 요지, 공소제기 일시, 공소제기 방식, 수사경위, 수사상황(제11조 제1항)

-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(지청장 조주연)은 약 2년 동안 전북 고창 등 전국 각지 영세한 양식업자 등 피해어민 13명으로부터 합계 37억 원 상당의 수산물을 편취한 활어 유통 사기 일당을 적발하여, 총책·알선책·담보제공책 등 주범 3인을 직구속 기소하고, 운송 및 차명계좌 제공자 등 공범 6인을 인지하여 불구속 기소하는 등 엄단하였음
- 경찰 수사결과 대부분 혐의없음 의견으로 전국 검찰청에 송치된 다수의 고소 사건에 대하여 계좌추적, 모바일 포렌식 등 철저한 보완수사를 통해 사기에 가담한 활어 유통조직 전체를 밝혀, 사기사건 암장 및 추가 피해 발생을 방지 하는 한편, 어민들이 유사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지역사회에 경각심을 고취함

1 **사건 개요**

① **피고인**

- 주범 : 피고인 A○○(43세), 수산물유통 및 회 포장소매전문점 4곳 운영
- 담보제공책 : 피고인 B○○(56세), 농수산물유통법인 운영
- 어민알선책 : 피고인 C○○(41세) 등 3명
- 운송책 등 : 피고인 D○○(60세), E○○(47세), 운송 및 차명계좌·전화 대여

※ [별첨1] 「피고인별 범행내용 및 처분결과」 참조

② 범죄사실 요지

- 피고인들은 활어유통을 원하는 전국 각지 가두리양식업자 등 영세어민들에게 거래초기 소량의 활어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여 환심을 산 후 수억 원 상당 대량의 활어를 공급받은 후에는 고기의 상태 등을 핑계로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것을 공모한 다음,
 - '18. 10. ~ '20. 9. 알선책을 앞세워 어민들에게 접근한 후 마치 대형거래처를 다수 확보한 신용 있는 유통업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에게 활어 외상거래를 요청하여 피해자 13명으로부터 총 139회에 걸쳐 37억 원 상당의 활어를 공급받아 사기
 - 같은 시기 각 피해자들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하면 부도어음이나 사실상 담보가치 없는 부동산 등 부실담보를 제공하여 변제기를 유예받고, 고소를 취소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변제기 유예의 재산상 이익을 취해 사기
 - 그 외 피고인 3인은 주범의 자신의 존재를 은닉할 수 있도록 사업자명의와 계좌를 제공하고 차명휴대전화를 제공하여 범행 조력
- ※ [별첨2] 「영세어민 대상 사기 사건 개요도」 참조

2 수사 경과

- '20. 5.~ '20. 9. 주범 A○○ 혐의 포착 및 전국 사건 7건 병합 조사
 - 혐의없음 의견 송치된 운송책 D○○에 대한 고소사건을 토대로 공범들이 등장하는 전국 7개 검찰청 사건을 이송받아 피의자별 행위 분담 등 분석
- '20. 9.~ '20. 12. 주범 A○○ 주거지 압수수색, 통화·계좌분석, 관련자들 조사
- '20. 12.~ '21. 1. 주범 A○○ 직구속 기소
- '21. 2. 담보제공책 B○○, 알선책 C○○ 직구속 및 공범 6인 관련 인지
- '21. 2. 19. 담보제공책 B○○, 알선책 C○○ 구속 기소, 주범 A○○ 불구속 기소, 운송책 외 2 불구속 기소

3

수사 의의

- 양식 수산물은 수협을 통한 유통이 안되고, 개별적 유통업자에게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수산업계의 거래 관행을 악용하여 피해어민들에게 소량의 활어 대금을 바로 지급하여 신용을 얻은 후 대량의 수산물을 외상으로 공급받은 다음에는 고기 상태 등을 트집잡아 어민들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각 영세 어민들로부터 수억 원 상당씩의 활어를 가로채고, 피해자들로부터 미수금 독촉을 받거나 형사고소를 당하면 어음이나 부동산 등 법률지식에 취약한 영세 어민들에게 부도어음 등 부실담보를 제공하여 고소취소를 받아 사건을 무마하는 방법으로 범망을 피해나가던 활어 유통조직을 밝혀내어 기소함
-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된 고소사건 수사 과정에서 주범 혐의 포착 후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는 사건을 모두 병합한 다음 주거지 압수수색, 계좌추적, 모바일 포렌식 등을 통해 피고인들이 조직적으로 공모하여 피해자 13명으로부터 37억 원 상당의 활어 등을 편취한 사건의 전모를 밝혀내 추가담자 3명을 직구속 기소하고 공범 6인을 인지하여 불구속 기소하는 등 서민생활침해사범 엄단하였고, 지역 영세어민들이 유사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지역사회에 경각심을 고취함

4

향후 계획

- 정읍지청은 앞으로도 다수 서민들의 피해를 양산하는 서민생활침해사범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고, 형사법령 개정에 따라 불송치되는 혐의없음 사건을 면밀하게 살펴 사건 암장을 방지하고, 억울한 피해자가 양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임 ☑

피고인별 공소사실 요지 및 처리 결과

순번	성명	공소사실 요지(죄명)	처분
1	A○○(43세) 주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'20. 7.~'20. 9.경까지 F○○와 공모하여 피해자 1명으로부터 총 37회에 걸쳐 7억 5,425만 원의 광어 활어를 공급받아 편취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] · '18. 12.~'20. 9.경까지 B○○ 내지 F○○와 공모하여 피해자 12명으로부터 총 89회에 걸쳐 29억 9,457만 원 상당의 송어 등 활어를 공급받아 편취[사기] · '19. 2.~'20. 12.경까지 B○○ 내지 D○○과 공모하여 피해자 4명으로부터 활어 대금 10억 4,035만 원 상당의 변제기 유예 받음[사기] · '19. 1.경 G○○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와 연결된 통장 및 체크카드를 양수하여 '19. 12.경까지 사용[전자금융거래법위반] 	'21. 1. 11. 구속 기소 '21. 2. 19. 별건 불구속 기소
2	B○○(56세) 담보제공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'19. 1.~'20. 9.경까지 A○○와 공모하여 피해자 3명으로부터 총 26회에 걸쳐 5억 8,771만 원 상당의 송어 등 활어를 공급받아 편취[사기] · '19. 2.~'20. 12.경까지 A○○, C○○, D○○와 공모하여 피해자 4명으로부터 송어 등 활어 대금 10억 4,035만 원 상당의 변제기 유예 받음[사기] · '20. 1.~'20. 2.경까지 피해자에게 연근 채취 시설비 명목으로 3회에 걸쳐 6,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[단독 사기] 	'21. 2. 19. 구속기소
3	C○○(41세) 어민알선· 유인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'18. 12.~'20. 2.경까지 A○○, B○○, D○○, F○○와 공모하여 피해자 4명으로부터 총 33회에 걸쳐 9억 6,410만 원 상당의 송어 등 활어를 공급받아 편취[사기] · '19. 3.~'19. 12.경까지 피해자 2명으로부터 총 20회에 걸쳐 2억 2,850만 원 상당의 전어 등 활어를 공급받아 편취[사기] · '19. 2.~'20. 12.경까지 A○○, B○○, D○○와 공모하여 피해자 4명으로부터 활어 대금 10억 4,035만 원 상당의 변제기 유예 받음[사기] 	'21. 2. 19. 구속기소
4	D○○(62세) 운송책	· '19. 1.~'19. 12.경까지 A○○과 공모하여 피해자 4명으로부터 14회에 걸쳐 4억 9,594만 원 상당의 송어 등 활어를 공급받아 편취[사기]	'21. 2. 19. 불구속기소
5	E○○(47세) 어민알선· 유인책	· '20. 8.~'20. 9.경까지 A○○, B○○와 공모하여 피해자 1명으로부터 총 9회에 걸쳐 2억 7,554만 원 상당의 전복 등 활어를 공급받아 편취[사기]	'21. 2. 19. 불구속 기소
6	F○○(56세) 알선·유통책	· '18. 10.~'20. 9.경까지 A○○, C○○, D○○와 공모하여 피해자 4명으로부터 총 16억 8,823만 원 상당의 우럭 등 활어를 공급받아 편취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및 사기]	'21. 2. 19. 기소중지 ※ 국외도피
7	G○○(65세) 계좌제공자	· '19. 1.경 A○○에게 본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와 연결된 통장 및 체크카드를 양도[전자금융거래법위반]	'21. 2. 19. 불구속 기소
8	H○○(41세) 차명폰제공자	· '19. 5.경 본인 명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C○○에게 건네줘 통신용으로 사용하게 함[전기통신사업법위반]	'21. 2. 19. 타관이송
9	I○○(41세) 차명폰제공자	· '20. 5.경 본인 명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유심칩을 C○○에게 건네줘 통신용으로 사용하게 함[전기통신사업법위반]	'21. 2. 19. 타관이송

[별첨2] 영세 어민들 대상 활어 유통 사기 사건 개요도

